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8호 2019. 4. 17.(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7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19-72호 2019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연장·운영……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383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19-395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13

○ 정선군 공고 제2019-40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14

○ 정선군 공고 제2019-440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9

○ 정선군 공고 제2019-462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8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7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 21-17	2019. 4. 9.	건물 철거	정선읍 신월리 704-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72호

2019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연장·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1.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당초 특별대책기간 : 2019. 3. 15. ~ 4. 21(38일)
나. 변경 특별대책기간 : 2019. 3. 15. ~ 4. 30(47일)
다. 연장사유
- 건조특보 지속과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연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정선군청(읍·면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 정선군 산불방지대책본부 : 033-560-2423~5, 2157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 없이 119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주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383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조례 제2672호, 2018.11.12.일 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별 경계지정(안 제2조)

- 도시공원 : 공원의 경계선 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
-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의 경계선

○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안 제3조)

-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설치 및 관리
-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표지판 즉시 변경 및 철거

○ 과태료 부과(안 제4조)

-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 시행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5. ~ 2019. 5. 7.

4. 제정 시행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 전 화: 033-560-2863
- ❍ 팩 스: 033-563-4000
- ❍ 이 메 일: nutri@korea.kr
-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②「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④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⑥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가. 표지판의 모양과 규격 및 재질, 설치 및 표시방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구 분	세 부 사 항
설치방법	지주식 또는 현수식, 스티커 부착, 노면표시 등
내 용	1. 도시공원 :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금연공원' 2.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경계선 안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표시사항	-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 정선군 CI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395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4. 4. ~ 2019. 4. 19.

2.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비 고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	기초번호		
정선군	고림길 1차종속구간	63-1→ 63-150	고림터덕길	1→150	고림으로 불리는 마을 지명과 안쪽에 터가 크고 넓은 골짜기라고 해서 터덕이라 불리는 지명 인용	긴종속구간 도로명부여

※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생략)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5. 의견제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560-2184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제 출 처 :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

도로명 변경 관련 주민 의견서

의견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도 로 명 :

※ 의견 및 사유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9-40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66kV 태경산업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2019.03.5 재결)을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의 불명(또는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66kV 태경산업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재결일자 : 2019년 3월 15일.
4. 공고기간 : 2019. 04.09. ~ 2019. 04. 25.(16일간)
5.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대상자
   ◉ 별지기재 목록과 같음
6. 기타사항

① 2019년 4월 18일까지 보상비 청구가 없을 경우 사용재결 보상비는 토지 소재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됩니다..

② 본 사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비(공탁시 공탁금)를 수령할 경우 이의 유보사유(예컨대 ‘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기재하고 보상비(공탁금)을 지급(출급)받아야 하며 이의유보 없이 보상비 또는 공탁금을 수령(출급)할 경우 후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정선군 정선읍 봉양2길 21) ☎(033)560-2434

○ 기타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9-2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440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방법을 변경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연구역 안내판의 필요 사항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변경하며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3항)

-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 표시(안 제6조제3항)

-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의 제목 변경

-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 제7조(흡연실의 설치)

○ 흡연실의 설치(안 제7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5. ~ 2019. 5. 7.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 전 화: 033-560-2863
- ❍ 팩 스: 033-563-4000
- ❍ 이 메 일: nutri@korea.kr
-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② (생략)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정선군 공고 제2019-462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조문상 타법 제명 개정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 반영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타법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9조제4항)
- 타법 제명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 조례 반영

○ 개별법령상 불일치한 기준정비(안 별표 5, 6, 7)
- 주거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 일치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완화(안 별표 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지역 완화

○ 시설용도에 대한 명확화(안 별표 5, 6, 7, 14, 20, 22, 24)
- 각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명시

○ 거리기준 명확화(안 별표 26)
-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기준에서 하천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직선거리로 명확화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9. 4. 17 ~ 2019. 5. 1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별표 14, 별표 20,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개정 2016.6.9., 2016.10.20.>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차목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개정 2016.6.9.>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호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

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개정 2016.6.9.>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개정 2016.6.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개정 2016.6.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개정 2016.6.9.>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개정 2016.6.9.>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24] <개정 2016.6.9., 2016.12.30.>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 · 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6] <개정 2016.12.30.>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1조제2항 관련)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부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및 개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정선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 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됨에 따른 제고 필요(국민 권익위원회 권고)

2. 주요내용

○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 신고대상 및 내용, 직무의 구체화,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 겸직 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겸직 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법에서 열거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은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
  * 영리, 비영리, 자영업 신고대상

○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및 관리(서식 마련)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
-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구체화 및 관리인 겸직 금지
  * 공공단체 구체적 범위(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 위반시 겸직 사임 권고권 시행
* 조례에 관리인 겸직시 사임 권고 규정화
- 겸직신고 위반시 징계기준 설정 및 처리절차 상세화

3. 예고기간 : 2019. 4. 17 ~ 4. 25(8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윤리실천규범”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

야 한다.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실천규범---------- ---------- -.
제2조(윤리강령)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 ---------- 별표 1과 --------- ----------.
제9조의2(겸직신고) <신 설>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35조제3항- ---------- ---------- -.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삭 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해 ---------- --------- 자료 제출----------.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 별표 1 〕

정선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정선군의회의원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의 번영에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에 정선군의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2">연번</td><td>1</td><td colspan="4">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td></tr>
<tr><td colspan="6">정선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td></tr>
<tr><td colspan="2">소속정당</td><td></td><td rowspan="2">선거구분</td><td>지 역 구</td><td></td></tr>
<tr><td rowspan="2">성명</td><td>한 글</td><td></td><td>비례대표</td><td></td></tr>
<tr><td>한 자</td><td></td><td colspan="2">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9">겸직내용</td><td>기관.단체명</td><td colspan="4"></td></tr>
<tr><td>직 위</td><td></td><td>기간</td><td colspan="2">~</td></tr>
<tr><td>수행업무내역</td><td colspan="4"></td></tr>
<tr><td>분 야</td><td colspan="4">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td></tr>
<tr><td>영리성 여부</td><td colspan="4">영리 □, 비영리 □</td></tr>
<tr><td>보수수령 여부</td><td colspan="4">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td></tr>
<tr><td rowspan="3">보수 수령액 (연간)</td><td>근로소득</td><td colspan="3">원</td></tr>
<tr><td>근로소득 이외 소득</td><td colspan="3">원</td></tr>
<tr><td>계</td><td colspan="3">원</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정선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충북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옥천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